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박종배**

목 차

- I. 서론
- II. 남북한의 저작권법제
 - 1. 개관
 - 2. 남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3. 소결
- III. 법제구성 비교
- IV. 실체법 비교
 - 1. 근거법령과 담당기관
 - 2. 저작권자의 정의와 저작권의 대상
 - 3. 권리보호기간과 저작물의 이용대가 지급
 - 4.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와 저작권의 제한
 - 5. 벌칙
- V. 절차법 비교
 - 1. 저작물 이용원칙과 이용조건
 - 2. 공동저작물의 권리와 행사방법
 - 3. 저작물의 이용절차
- VI. 결론

* 본 논문은 「통일한국의 지식재산권 미래 : 남북한 지식재산권 제도 비교와 통합」(저자 박종배, 2011년 4월 출간 예정)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 특허청 비상계획관/ 법학박사(p516115@kipo.go.kr)

초록

북한은 저작권법이 있다고 해도 그 저작권법에는 사회주의국가 법률의 특징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제도의 본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고 창작활동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북한에서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곧 북한주민에게 저작권 보호의식을 일깨우고 소유의식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남북한은 반세기 넘게 단절되어 왔음에도 각기 다른 체제 속에서 많은 저작물들을 축적해 왔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북한 간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어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되면 각 저작물을 상호 보호하고 이용하고 싶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런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여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분석을 통한 법제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Ⅱ.에서는 남북한의 저작권법제에 대한 개관과 주요 내용을 기술한다. Ⅲ.에서는 법제구성에 대해서 비교하고, Ⅳ.에서는 실체법에 대해서 비교하며, Ⅴ.에서는 절차법에 대해서 비교한 다음, 마지막 Ⅵ.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법제 통합방향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주제어

저작자, 저작물, 저작인접권, 출판권, 저작권법제,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I. 서론

남북한 저작권법제¹⁾를 비교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주의 국가의 법제도로서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법의 특성과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²⁾ 현재 남한법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주의적인 법이고, 북한법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주체사상의 법으로서 서로 상극적인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법통합시에는 이러한 법체계의 이질성 속에 최대한 한 국적 공통성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³⁾ 따라서 북한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한 인류보편적인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남한의 법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북한 저작권법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이끌어내고 상호 보완을 통해 남북한 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저작물의 상호 이용을 확대시켜 문화부문에서의 통합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⁴⁾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그간 남북한 저작권법에 관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선행연구들에 비해 남북한 저작권법제 전체의 관점에서 관련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II.에서는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개관과 저작권제도의 목적, 저작물,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출판권 및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보호 등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III.에서는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구성에 대해서 비교하고, IV.에서는 실체법 비교로서 근거법령과 담당기관, 저작권자의 정의와 저작권의 대상, 권리보호기간과 저작물의 이용대가 지급,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와 저작권의 제한 등을 다루며, V.에서는 절차법 비교로서 저작

1) 남한은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법률 제9625호)이 개정되면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에 흡수되어 저작권보호가 강화되는 동시에 단일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반면에 북한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법(2003. 6. 11, 정령 제3831호)이 저작권법과는 별도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간에 상호 비교될 수 있는 저작권법만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2)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경상대학교 법학 연구, 제11집(2002), 78면.

3) 박종배,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 법제 통합을 위한 제언”, 배재대학교, 박사. 2010, 8-9면.

4) 권순택,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평가”, 제도 연구, 2001, 135면.

물 이용원칙과 이용 조건, 공동저작물의 권리와 행사 방법, 저작물의 이용절차 등에 대해서 논의한 후 마지막 결론으로 법제 통합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남북한의 저작권법제

1. 개관

법제구성 및 체제면에 있어서 북한의 저작권법(총 6장 48조문)은 남한의 저작권법(총 11장 142조문)에 비해 포괄적이고 단순한 기본 틀만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보호와 저작권이용 등 체제면에서 여러가지 미비점과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저작권사업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저작물의 내용을 문제삼아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사회주의국가 체제하에서 제한적으로 저작권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⁵⁾ 아울러 남한의 시행령(총 77조문)이나 시행규칙(총 30조문)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업무수행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남한 저작권법과 비교해서 그 보호 수준이 낮고 북한 저작물의 권리 관계도 저작자 개인 중심의 남한 저작권 체제와는 다른 모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⁶⁾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 마련은 물론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대외용 및 선전용이 될 수도 있는 구조적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남한은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비하여 북한은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발전에까지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 또한 남한은 창작자를 중심으로 저작물의 창작행위 그 자체로부터 저작권이 발생되고 당연히 그 권리주체가 되지만, 북한에서는 저작물의 내용이 사회체제에 부합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5) 김상호, 전게서, 23면 참조.

6)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서강법학, 제11권(2009.12), 252면 참조.

오로지 법질서에 따라 보호할 만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저작권자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⁷⁾ 아울러 남한에서는 인정되고 있는 저작자의 추정, 공표동의의 추정, 저작권 등록, 출판권 설정 등도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미공표저작물은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절차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남한은 저작물의 이용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국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도 남한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도 시장의 자율에 의하여 결정하는 반면에 북한은 일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만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얻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이용요금도 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일률적으로 가격 제정기관에서 정한다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2. 남북한 저작권법의 주요내용

1) 북한 저작권제도

(1) 저작권제도의 목적

북한은 2001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로 저작권법을 제정하였으며,⁸⁾ 그 제정목적으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7) 김상호, 전거서, 104면 참조.

8) 현재 저작권법은 2006년 수정보충되었다. 개정 법률에서는 제12조만을 부분 개정하였는데, 2001년 법률에서는 “법령, 결정, 지시 같은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를 2006년 법률에서는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상업적 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개정함으로써 법률문건을 포함한 기타 국가문건들에 대해 상업적 영리 취득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나 당국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시장적 요소를 저작권법에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조항마다 내용의 소재목을 병기하였다(최은석, 전거서, 239면 참조).

다.”⁹⁾는 통상적이고도 일반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작권법은 문화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함이 일반적임에 반하여 북한 저작권법은 문학예술 외에 과학기술발전도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의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¹⁰⁾ 아울러 북한은 저작권보호를 국가의 정책으로서 다룰 것을 선언하고 “창작자의 저작활동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¹¹⁾ 이는 “창작자의 작품에 대한 권리는 국가적, 사회적 이익과의 통일 속에서 실현된다.”¹²⁾고 하여 개인의 이익과 국가, 사회적 이익 간의 통일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그 근원(根源)을 찾을 수 있다.

(2) 저작물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해당기관이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저작권의 대상을 정하게 되는데, 이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크게 여덟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¹³⁾ 세부내용은 실체법 비교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원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만든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¹⁴⁾ 사전이나 선집 같은 편집저작물도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조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¹⁵⁾ 선집의 경우 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어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상업적 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며,¹⁶⁾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

9) 북한 저작권법 제1조.

10) 권재열 외 8인, 북한의 법체계 : 그 구조와 특색, 서울 : 집문당, 2004, 404면.

11) 북한 저작권법 제2조.

12)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편, 법학사전, 1971, 418면.

13) 북한 저작권법 제9조.

14) 북한 저작권법 제10조.

15) 북한 저작권법 제11조.

16) 북한 저작권법 제12조.

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보호하지 않는다.¹⁷⁾ 북한에서는 저작물을 일반에게 보급하기에 앞서 저작물 내용에 대한 통제를 각 집단적 조직차원에서 내리고 있으므로 체제에 부합하지 않은 저작물은 철저히 법적으로 배제할 수 있음을 말하고있다.

(3) 저작권자

북한에서는 ‘저작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저작권자’를 사용한다. 즉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창작자로부터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은 자이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갖는다.¹⁸⁾ 외국인에 대해서도 북한이 가입한 조약의 체약국 국민과 법인에 대해서는 조약에 따라 그 보호를 인정하며, 비체약국 국민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보호를 인정한다.¹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단체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저작권을 가진다.²⁰⁾ 북한에서는 개인단위로 창작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촬영소나 작가동맹 등 여러 기관이나 단체의 소속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개인이 창작자는 될 수 있지만 저작권자는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¹⁾ 또한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공동저작물은 창작한 자들이 공동저작권을 가진다. 공동저작권의 행사는 저작권자들의 합의에 의해 정하며 대표를 선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²²⁾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제작자에게 있으며, 다만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이용된 소설, 대본, 음악,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가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다.²³⁾ 그러나 영상물을 직접 창작한 영화감독의 권리는 여기서 보호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편, 영상물을 비롯하여

17) 북한 저작권법 제6조.

18) 북한 저작권법 제13조.

19) 북한 저작권법 제5조.

20) 북한 저작권법 제16조.

21) 윤대규, “북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문제점”, 북한법, 제3권(2000. 3), 124면.

22) 북한 저작권법 제17조.

23) 북한 저작권법 제18조.

저작물·편집물에서 그 개작 혹은 편집에 기여한 원저작권자들은 별도로 보호받고 있다.²⁴⁾

(4) 저작권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크게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과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이러한 용어 대신에 인격적 권리, 재산적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방법에는 지적재산권과 같이 등록 등의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만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와 저작자가 저작한 때로부터 자동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후자인 무방식주의가 일반적이며 우리나라도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²⁵⁾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 등록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기간인 저작물이 발표된 때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발표, 즉 공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⁶⁾

①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만이 갖게 되며 양도, 상속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무기한 보호된다.²⁷⁾ 인격적 권리에는 저작물의 발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에 창작자의 이름을 밝힐 권리인 성명표시권 및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 등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있다.²⁸⁾ 인격적 권리의 보호기간은 무한대로 규정되어 있지만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창작자 사후에 누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

24)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 제정의 의의와 해설”,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2001, 8면.

25) 권재열 외 8인, 전거서, 406면.

26) 북한 저작권법 제25조.

27) 북한 저작권법 제20조.

28) 북한 저작권법 제14조.

②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로는 저작물의 ① 복제권, ② 공연권, ③ 방송권, ④ 전시권, ⑤ 배포권, ⑥ 2차적 저작물 작성권, ⑦ 편집저작물 작성권이 인정된다.²⁹⁾ 또 여기에는 작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작품 이용에 대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속한다. 재산적 권리는 인격적 권리와는 달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다만 재산적 권리를 다른 나라 법인이거나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³⁰⁾ 이는 행정법 위주의 사회주의체제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재산적 권리를 가진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할 경우에 그 권리는 이들을 계승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진다.³¹⁾ 즉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게 됨을 뜻한다.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로부터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된다.³²⁾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로부터 50년까지 보호되며,³³⁾ 공동저작물의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의 발표시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된다.³⁴⁾ 공동저작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기간이 저작물의 발표시부터 기산한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창작시부터 보호기간이 시작되는 남한법과 차이를 보인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복제, 방송, 전시, 배포, 개작, 편집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지며,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자가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우선적 이용권이 있다.³⁵⁾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허가나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그 요금은 가격 제정기관에서 정한다.³⁶⁾ 만약 저작권자를

29) 북한 저작권법 제15조.

30) 북한 저작권법 제21조.

31) 북한 저작권법 제22조.

32) 북한 저작권법 제23조.

33) 북한 저작권법 제24조.

34) 북한 저작권법 제23조.

35) 북한 저작권법 제28조.

36) 북한 저작권법 제31조.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³⁷⁾

(5) 저작물의 이용과 제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 그 사유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³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에 관하여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아홉 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실체법 비교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6) 저작인접권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저작인접권이다.³⁹⁾ 북한 저작권법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여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 자 또는 그 권리의 양수인을 저작인접권자로 규정하여⁴⁰⁾ 보호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연을 행하는 연기자 외에 극단주와 같은 공연사업자도 저작인접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공연과 실연을 구분하고 실연자에 대해서만 인접권을 부여하는 남한 저작권법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저작물을 공연한 실연자는 성명표시권과 복제, 방송, 배포권을 가지는데,⁴¹⁾ 저작인접권자에 대해서도 인격권의 하나인 성명표시권과 배포권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남한보다 앞선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녹음, 녹화물을 제작한 자는 복제, 배포권을 갖는다.⁴²⁾ 방송권자는 그 녹화물을 녹음, 녹화, 사진촬영 같은 방법으로 복제할 수 있으며 중계방송 또는 재방송을 할 수 있는

37) 북한 저작권법 제27조.

38)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5, 430면.

39) 윤선희, 전거서, 446면.

40) 북한 저작권법 제33조.

41) 북한 저작권법 제34조.

42) 북한 저작권법 제35조.

권리를 갖는다.⁴³⁾ 그러나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행사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저작인접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며, 그 보호기간은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도 공정이용의 규정이 적용되며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⁴⁴⁾

(7)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⁴⁵⁾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와 개인은 침해에 대한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⁴⁶⁾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⁴⁷⁾

(8) 북한에서의 출판사업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어문저작물이다. 어문저작물을 보급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과 배포권을 가진 저작권자가 되겠지만 저작권자가 이를 대량으로 복제, 배포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인쇄하여 도서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설정기간 동안에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출판권에 관하여 남한 저작권법에는 저작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 저작권법에는 출판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출판이

43) 북한 저작권법 제36조.

44) 북한 저작권법 제40조.

45) 북한 저작권법 제46조.

46) 북한 저작권법 제47조.

47) 북한 저작권법 제48조.

라는 특정 산업영역에 대해 별도로 법적 규율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일반 저작물의 이용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저작물 이용은 배타적 이용과 단순 이용으로 나뉘므로 복제·배포에 관한 배타적 이용허가로 출판권 설정과 같은 규율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⁴⁸⁾

출판사업에 관해서는 출판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출판법에 의하면 출판기관이란 출판물 원고를 집필, 편집하고 출판물을 발행하는 기관이며 필요에 따라 인쇄사업도 할 수 있다.⁴⁹⁾ 그러나 출판기관도 등록된 성격과 임무에 맞는 출판물만을 출판할 수 있으며 등록에 반하는 출판물을 출판할 수 없다.⁵⁰⁾ 출판기관은 출판물을 재판, 전재, 복사하거나 수정 보충할 경우 저작자와 합의하여야 하지만, 저작자와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는다.⁵¹⁾ 이는 출판물, 즉 저작물의 내용 수정이나 변경권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개인적 권리로서의 재산권보다는 출판통제와 관련된 출판권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판법 제16조에서도 출판계획은 출판물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계획임을 선언하고 있다.

출판물은 배포승인을 받아야 보급할 수 있으며 출판물의 배포승인은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⁵²⁾ 출판물의 배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 세대별로 하며 출판물보급기관이 출판물을 배정한다.⁵³⁾ 출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두 기관은 출판물을 통하여 기밀이 새어나가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가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한다.⁵⁴⁾ 기밀을 누설시키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 풍조를 퍼뜨릴 수 있는 출판물은 생산, 발행, 보급과 반출입이 중지되고 회수된다.⁵⁵⁾ 즉 출판법의

48)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 제정의 의의와 해설”, 전거서, 10면.

49) 북한 출판법 제11조.

50) 북한 출판법 제14조.

51) 북한 출판법 제15조.

52) 북한 출판법 제40조.

53) 북한 출판법 제41조.

54) 북한 출판법 제47조.

55) 북한 출판법 제48조.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출판, 보급에 관한 업무를 국가에서 관장하고 감독하며 저작자와 개인 출판업자 간의 계약에 의한 출판행위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 출판업자가 출판에 관하여 독점권을 갖는 출판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9)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보호

북한은 그동안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에 소극적 태도를 취해 왔지만, 2001년 저작권법을 제정한 이후 2003년 4월 저작권에 관한 대표적 국제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른조약에 전격 가입하였다. 그간 저작권에 관해서는 지적재산권과는 달리 우리 국민에 의한 북한 저작물의 무단이용이 문제가 되어 왔었다. 따라서 북한의 베른조약 가입에 따라 남북한 저작권 문제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를 주장할 권리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죄가 친고죄임을 고려할 때 북한의 저작물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를 받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⁵⁶⁾

2) 남한 저작권제도

(1) 저작권제도의 목적

저작권제도는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⁵⁷⁾고 규정하여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장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적인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

56) 권재열 외 8인, 전거서, 411-412면 참조.

57) 남한 저작권법 제1조.

하고자 하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⁵⁸⁾ 이러한 취지에 맞춰 우리는 창작자의 정신적 노동의 결과로 다양한 예술작품과 학술적인 발전을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법은 그러한 노동에 대한 대가(incentives)로서 창작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은 제한된 권리이며 저작권의 행사는 반드시 공공정책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하며, 만약 이에 반하는 권리행사의 남용(misuse)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⁵⁹⁾

(2) 저작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지만, 이런 정의규정만으로는 어떤 것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가 그 판정기준이 아주 어렵다.⁶⁰⁾ 여기서 정의규정과 별도로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을 설정하여 보호를 받는 주된 저작물을 표현형식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다. 또한 법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¹⁾

따라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있어야 하며, 기존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한 것(예컨대 구두점, 용어의 변경 등)은 기존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하며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아울러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편집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한다.⁶²⁾ 단지, 편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원저작물이라고는 말할 수 없

58)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지적재산법, 서울: 세창출판사, 2009, 232면.

59)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 입문, 서울: 성민사, 2007, 211면.

60)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상계서, 237면.

61) 남한 저작권법 제5조.

62) 남한 저작권법 제6조.

다)의 저작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구성부분 저작물의 저작권은 당해 부분의 저작자에게 속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성질을 갖는 관공문서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프로그램 언어, 규약 및 해법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규정한다.⁶³⁾

외국인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내국인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다.⁶⁴⁾

(3) 저작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으로 저작권의 귀속주체이다.⁶⁵⁾ 원칙적으로는 저작자가 저작권자로 된다. 다만, 저작재산권은 양도·상속에 의한 이전이 가능하나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격권자의 분리현상이 일어난다.⁶⁶⁾ 그리고 원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⁶⁷⁾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추정의 효과로 인해 반증⁶⁸⁾이 없는 한 저작권의 주체는 바뀌지 않으며, 이 경우에 추정은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것뿐만 아니라 불리한 것도 추정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추정의 효과는 소급한다.⁶⁹⁾

한편, 저작권법은 법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하에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63) 남한 저작권법 제7조 및 제101조의2.

64) 남한 저작권법 제3조.

65) 윤선희, 전게서, 378면.

66)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전게서, 252면.

67) 남한 저작권법 제8조 제2항.

68) 반증이 있는 저작권의 귀속은 물론이고 그 효과 모두가 원래대로 소급한다.

69) 윤선희, 상게서, 378면.

인정하고 있다. 즉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⁷⁰⁾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 저작물의 저작자는 공동하여 창작한 자 전원이 된다. 결합저작물의 경우에는 창작에 관여한 각자가 각 분담부분에 대한 저작자가 된다.⁷¹⁾

(4) 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의미하며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⁷²⁾ 즉 저작의 사실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하며 특별한 절차를 밟거나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무방식주의라 하며 우리나라,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베른조약이 취하는 바이다. 이러한 저작권의 법적 성격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유한하고 배타적 권리인 동시에 다수 권리의 집합이므로 ‘권리의 다발’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며,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그 성질상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다.⁷³⁾ 우리법상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3종이 있으며 각각의 권리에 대해서 추정규정 또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

70) 남한 저작권법 제15조.

71)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전거서, 253면.

72) 남한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73) 남한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는 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⁷⁴⁾

저작인격권은 양도불가능한 권리이므로 저작자의 사망과 더불어 소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나, 저작자 사후 저작물의 동일성 변경 등에 의해 저작자의 명예가 침해될지도 모르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일정한도에서 저작자의 사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⁷⁵⁾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위와 같은 침해나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⁶⁾

②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양도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질권설정도 가능하다. 또 유체재산권과 달리 독특한 소멸사유를 가지고 있다.⁷⁷⁾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창작시를 시기로 하여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 중 및 저작자 사후(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⁸⁾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보호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74) 남한 저작권법 제15조.

75) 남한 저작권법 제14조.

76) 남한 저작권법 제128조.

77)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전거서, 261면.

78) 남한 저작권법 제39조.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⁹⁾ 그리고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 등의 보호기간은 특례규정을 두어 별도로 보호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그 보호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한다. 저작권법은 문화자산으로서의 저작물의 특수성에 비춰 ①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②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⁰⁾

(5) 저작권의 제한

저작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가 국가의 학문·예술 또는 지식전달·교육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과학적·기술적 연구나 정보의 전달을 차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도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 자체에 내재하는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저작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하는 유한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public domain)이 돼야 할 것이다.⁸¹⁾ 이와 같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실체법 비교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한편, 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용자는 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⁸²⁾ 또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⁸³⁾

이 규정은 주의적 규정이다. 즉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은 오로지 저작재산권만을 제한할 뿐이며, 저작인격권까지 제한하거나 또는 저작인격권이 영

79) 남한 저작권법 제44조.

80) 남한 저작권법 제49조.

81)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전거서, 266면.

82) 남한 저작권법 제37조.

83) 남한 저작권법 제38조.

향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입장에서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케 할 수 있도록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에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및 판매음반 제작의 경우에 한하여 광의의 강제허락을 인정하고 있다.

(6) 저작인접권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인정한 권리가 저작인접권이다.⁸⁴⁾ 이는 실연자가 갖는 복제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대여권과 음반제작자가 갖는 복제·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이 그것이다.

저작인접권도 저작자의 권리와 같이 ‘저작인접권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⁸⁵⁾ 즉 저작인접권도 저작재산권과 같이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등에 관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인접권은 ①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②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③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⁸⁶⁾ 그리고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에 관한 규정은 저작재산권의 규정이 준용된다.

(7) 출판권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 출판하는 것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

84) 윤선희, 전거서, 446면 참조.

85) 남한 저작권법 제90조.

86) 남한 저작권법 제86조.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⁸⁷⁾ 출판권이 설정되면 출판자는 저작물을 출판할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저작권자라도 그 이후는 저작물을 원작대로 출판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그 저작물을 전집 기타의 편집물에 수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은 일정한 경우, 즉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출판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이전성을 갖는다. 따라서 그 양도·질권설정도 가능하다. 다만, 저작권법은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⁸⁸⁾고 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8) 등록

저작권의 등록이란 저작재산권의 이전 등 저작권법상의 소정의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를 말한다. 저작권법에는 이러한 저작권 등록 외에도 출판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나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도 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등록은 권리발생의 요건이 아님은 물론 저작재산권의 이전 등에 있어서도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법은 저작자 이익보호를 위한 특별한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법이 인정하는 등록에는 ① 저작자 관련 등록, ② 저작물 관련 등록, ③ 최초발행·공표일의 등록, ④ 저작재산권의 변동 등에 관한 등록, 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등록이 있다.⁸⁹⁾

(9)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87) 남한 저작권법 제57조 제1항.

88) 남한 저작권법 제63조.

89)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전거서, 285-286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또 저작자의 저작물을 자기 마음대로 실명을 붙여 발행하게 되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즉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행위가 행해진 경우 권리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⁹⁰⁾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행위, 즉 침해물건의 수입행위,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⁹¹⁾

저작권 등의 침해가 있었을 경우 저작권자 등이 취할 수 있는 법률상의 수단으로는 민사상 구제와 형사상 구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민사상의 구제는 침해행위 정지 및 예방청구권, 복제물의 폐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 등의 조치청구권이 있다. 형사상의 제재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⁹²⁾ 주의해야 할 것은 저작권 범죄에 대한 공소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이도 공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⁹³⁾

(10)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⁴⁾ 그러므로 외국인의 저작물이라

90) 윤선희, 전거서, 463면.

91) 남한 저작권법 제124조.

92) 남한 저작권법 제136조.

93) 남한 저작권법 제140조.

94) 남한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⁹⁵⁾ 이와 같이 우리 저작권법은 외국인 저작물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 조약인 베른조약(Berne Convention)에서는 이러한 상호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150개국 이상이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다.⁹⁶⁾ 따라서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저작물은 상호 자국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소결

남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살펴본 남북한의 저작권법에 대해 북한법을 중심으로 총론적으로 정리한 후 북한 저작권법의 제정 의의와 입법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의 내용과 연속성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북한의 저작권법은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기초만을 세운 것으로 창작자에게 기본적인 저작권 인정 및 권리의 이용 허용 및 침해시 규제 등이다. 특징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근거, 단체 명의 및 기관 저작권 보호 위주, 정보화시대 대처 미약, 문학예술 외에 과학기술발전도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등⁹⁷⁾ 사회주의 국가의 법제도로서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 또 남한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보호에 충실하려고 그 보호와 제한 간의 한계를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 저작권법은 이와 달리 포괄적이고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2001년 이전까지 저작권법이 없었지만 2001년 4월 저작권법 제정과 아울러 2006년 2월 부분개정을 하였으며, 2003년 4월 국제저작권협약인 베른협약에 가입을 하였다. 이처럼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서두른 배경에는 남북관계와 국제협약 가입을 위해서 급조하여 입법

95) 남한 저작권법 제3조 제3항.

96) 한국발명진흥회, 전게서, 216-217면.

97) 최은석, 전게서, 258면.

하지 않았나 판단되어진다. 즉 추측컨대, 첫째, 경제난국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과 인터넷 구축 등 정보기술산업 분야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함이며,⁹⁸⁾ 둘째, 북한주민에게 저작권 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의 보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도 저작권법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국제조약에도 가입하여야 하는데, 바로 북한 저작권법의 제정은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이해된다.⁹⁹⁾

또한 북한 저작권법의 마련은 남북통일후 한반도에 공통된 저작권법 질서가 보편적인 방식 및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립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본다. 북한 저작권법이 비록 사회주의 국가 법률의 특징을 담고는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이 국제적인 저작권법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도적으로 저작권법 질서의 확립을 주장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⁰⁰⁾ 단지, 현행 북한법의 특수한 규정들을 가능한 한 보편적 성격의 규정들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의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I. 법제구성 비교

남한의 저작권법은 2009년 4월 최종 개정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성은 총11장 142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제5장의 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제7장 저작권 위탁관리업,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등¹⁰¹⁾ 저작권에 관한 개념, 대상, 이용절차 및 방법, 침해시 구제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으로 인해 개인의 저작물

98)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 제정의 의의와 해설”, 전게서, 2면.

99) 권순택, 전게서, 142-143면.

100)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 제정의 의의와 해설”, 전게서, 3면.

101) 국회 홈페이지,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저작권법, 2010. 10. 19 참조.

보호는 물론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2006년 2월 최종 개정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성은 총 6장 48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제2장 저작권의 대상, 제3장 저작권자, 제4장 저작물의 이용, 제5장 저작인접권자, 제6장 저작권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¹⁰²⁾ 저작권에 관한 기본개념 위주로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등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및 권리제한, 저작권 위탁관리업,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외국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도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업무협약 및 제도 이용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구성 비교

남한	북한
저작권법	저작권법
(2009년 4월) : 총 11장 142조문으로 구성	(2006년 2월) : 총 6장 48조문으로 구성
제1장 : 총칙	제1장 : 저작권법의 기본
제2장 : 저작권	제2장 : 저작권의 대상
제3장 : 저작인접권	제3장 : 저작권자
제4장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4장 : 저작물의 이용
제5장 :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제5장 : 저작인접권자
제5장의 2 :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6장 : 저작권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장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7장 : 저작권 위탁관리업	
제8장 : 한국저작권위원회	
제9장 :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장 : 보칙	
제11장 : 벌칙	

102)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북한법령, 2010. 10. 19 참조.

IV. 실체법 비교

1. 근거법령과 담당기관

저작권법에 관한 법률근거는 남한은 저작권법(2009. 4. 22 : 개정)에서 규정되어 있고 업무담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저작권법(2006. 2. 1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수정)으로 규정되어 있고 업무담당은 정무원 문화예술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정무원은 북한의 내각이므로 최고 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만큼 저작권사업에 관하여 국가관리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지도와 통제를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2. 저작권자의 정의와 저작권의 대상

남한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³⁾ 그러나 북한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란 “저작물을 창조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 받은 자다.”고 정의하고¹⁰⁴⁾ 있음을 볼 때 저작자의 개념을 창작자 중심으로 보지 않고 저작권을 승계 받은 저작권자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개인과 단체간의 저작권 귀속문제를 명의를 따라 결정하는 것은 우리와 공통되는 것이지만, 창작자와 단체간의 약정으로 저작권의 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지는 않다. 즉 개인과 단체간의 이익이 상충하는 사례를 염두에 두어 섬세하게 규율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남한의 저작권의 대상으로는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¹⁰⁵⁾ 반면에 북한은 과학논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음악·무대예술·영상·미술·사진·도형·컴퓨터

103) 남한 저작권법 제2조.

104) 북한 저작권법 제13조.

105) 남한 저작권법 제4조.

터프로그램저작물을 규정하고¹⁰⁶⁾ 있는 것으로 볼 때 저작물의 종류가 남한과 거의 다르지 않다. 다만, 건축저작물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과학논문’을 명시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도 저작권법의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에 있어서도 특이한 점은 민속고전작품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전통민속 음악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행하여 졌고 앞으로 많은 이용(남한에서의 이용 포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편집저작물의 대상인 선집같은 경우는 특징인의 어록이 많이 집필되어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보호저작물로서 남한 저작권법에서는 국가가 작성한 법령, 결정 등의 편집물이나 번역물에 대해서도 비보호됨을 밝히고 있으나 북한법에서는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남한보다 단순하게 규율하고 있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에서는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북한체제의 특수한 규율에 해당한다. 남한에서 외설이나 불온한 내용으로 인해 출판, 공연 등 이용행위가 금지되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권법규율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비록 남한저작물이 북한에서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배제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¹⁰⁷⁾ 이밖에 저작재산권의 내용에 있어서도 북한에는 ‘공중송신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¹⁰⁸⁾ 남한 저작권법은 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등 새로운 융합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인 ‘공중송신’을 신설함으로써 저작자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형태가 등장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¹⁰⁹⁾ 반면에 북한에서는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6) 북한 저작권법 제9조.

107)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 제정의 의의와 해설”, 전게서, 5면.

108) 남한 저작권법 제18조에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공중송신권을 인정하고 있다.

109)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전게서, 262면.

3. 권리보호기간과 저작물의 이용대가 지급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있어서는 남북한 공히 저작자(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그 기산점과 기산방법에 있어서 남한은 ‘창작한 때부터’이고,¹¹⁰⁾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는¹¹¹⁾ 반면에 북한은 ‘발표된 때부터’이고,¹¹²⁾ ‘저작물이 발표되었거나 창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는¹¹³⁾ 점에서 남북한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북한에서는 저작물이 발표되는가 되지 못하는가가 저작권 발생에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며 결국 발표되지 않은 미공표저작물은 저작권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서도 남한은 시장의 자율, 즉 당사자 계약에 의해 결정하지만, 북한은 가격제정기관이 요금을 정한다는 것¹¹⁴⁾은 바로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구소련 하의 러시아연방이나 동독에서도 이와 같이 저작권료를 일률적으로 정해서 시행한 바 있는데,¹¹⁵⁾ 북한도 이러한 사회주의체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법령으로 정한 그 액수가 탄력적이지 못하고 일률적이고 경직되어 있을 경우 북한 저작권자가 이런 규율에서 벗어나 비밀리에 저작권 거래를 할 가능성도 있으리라 예상되어진다.¹¹⁶⁾

110) 남한 저작권법 제10조.

111) 남한 저작권법 제44조.

112) 북한 저작권법 제23조.

113) 북한 저작권법 제25조.

114) 북한 저작권법 제31조.

115)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효력을 발생했던 러시아 저작권법 시행령(러시아연방각료회의령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사용료, 러시아연방각료회의령 학술·문학·예술저작물의 발행에 대한 저작권사용료)에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저작물의 분량에 따라 각기 보수액이 결정되어 있었다(김상호, “북한 저작권법 제정의 의의와 해설”, 전개서, 10면).

116) 박태윤, “남북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남북한 저작권법 비교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 2002, 7, 76면.

4.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와 저작권의 제한

남한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의해서 보호되며,¹¹⁷⁾ 대한민국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나 대한민국에 맨 처음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¹¹⁸⁾ 그러나 ‘실체적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의하여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한 내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¹¹⁹⁾ 반면에 북한에서는 외국인의 저작권에 대해서 해당 국가가 그 조약에 가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처음으로 공표되는 것일 때 비로소 보호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북한에 투자한 외국인이 북한에서 저작물을 제작하여 공표한 경우에 그 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¹²⁰⁾ 매우 협소한 보호인 동시에 외국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을 제한하여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즉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¹²¹⁾를 정하고 있다.¹²²⁾ 남한에서는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②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③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④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⑤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⑦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⑧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⑨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⑪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⑫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

117) 남한 저작권법 제3조.

118) 윤선희, 전게서, 412면.

119) 권순택, 전게서, 143면.

120) 김상호, 전게서, 105면.

121) 이를 자유사용(free use)이라 하며, 영국법에서는 Fair Dealing, 미국법에서는 Fair Use라 부른다. 입법에 따라서는 저작권의 제한(restrictions) 또는 예외(exception)로 규정하고 있다.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전게서, 267면.

122) 저작권이 제한되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저작물 이용의 성질로 보아 저작권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 ② 공익상의 이유에서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③ 다른 권리와와의 조정을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④ 사회관행으로서 행해지고 있어 저작권을 제한하여도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것 등으로 문화적 소산의 공정한 이용을 고려하여 정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윤선희, 전게서, 430-431면.

음·녹화, ⑬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⑭ 번역 등에 의한 복제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¹²³⁾ 그러나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및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① 개인 또는 가정적 범위에서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번역하는 경우, ②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과 같은 장소에서 저작물의 보존, 진열,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 학교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방송, 개작하는 경우, ④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 작성에 이용하는 경우, ⑤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에 내는 경우, ⑥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⑦ 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하는 경우, ⑧ 공공장소에서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⑨ 맹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점자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¹²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서 남한법에서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또 저작물의 이용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 조건을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를 넓게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저작권법은 개인 또는 가정내 사용에서 복제 외에 번역을 허용하고 있고,¹²⁵⁾ 학교교육을 위한 이용에서 복제, 방송 외에 개작을 추가하고 있다. 저작물의 인용에서도 남한저작권법에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하여 비교적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하는 데 비해, 북한 저작권법은 단지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¹²⁶⁾ 특히 저작권법 제32조 제4호에서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 작성에 이용할 경우”는 판단 여하에 따라서 그 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 남북한 간에 큰 차이점

123) 남한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6조.

124) 북한 저작권법 제32조.

125) 다만, ‘번역’을 추가한 것은 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인다. 남한에서도 사적 내지 가정 내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법상 보완을 검토할 만하다.

126)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 제정의 의의와 해설”, 전거서, 10면.

이라 할 수 있다.¹²⁷⁾

5. 벌칙

남한의 저작권법은 저작권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형사적인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며 그 벌칙¹²⁸⁾ 으로 침해죄, 부정발행 등의 죄,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저작재산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²⁹⁾ 반면에 북한은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¹³⁰⁾ 남한과 같이 구체적 죄목과 벌금 등을 명시하지 않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단순하다는 점이다. 이는 저작권에 관한 권리분쟁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의해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¹³¹⁾ 권리자의 이익보호와 구제측면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실체법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① 근거법령	저작권법(2009. 4. 22 : 개정)	저작권법(2006. 2. 1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수정)
② 담당기관 132)	문화체육관광부	정무원 문화예술부

127) 최은석, 전거서, 253면.

128) 남한 저작권법 제136조 내지 제138조.

129) 남한 저작권법 제136조.

130) 북한 저작권법 제47조.

131) 북한 저작권법 제48조.

132) 북한 저작권 담당기관은 '정무원 문화예술부'에서 총괄하지만, 저작물 관련 대외 창구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조선목란비데오', '조선영화수출입사',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의 대남경제창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다. 고윤정·김윤향, "북한저작물의 보호", 통일논총, 제21호(2003.12), 230면.

③ 목적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 함	저작물의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 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 함
④ 저작권의 대상	• 소설·시·논문·강연·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 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과학논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 음악저작물 •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 예술저작물 • 영화, 텔레비전 편집물 같은 영상 저작물 • 영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 같은 미술저작물 • 사진저작물 • 지도, 도표, 도면, 약도, 모형 같은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상업적 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음

⑥ 저작권자의 정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물을 창조한 자 또는 권리를 넘겨받은 자
⑦ 저작재산권의 내용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시권 •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	•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할 권리 • 저작물의 원작이나 복제물을 전시 또는 배포할 권리 • 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 • 저작물을 편집할 권리
⑧ 보호기간 및 기산방법	• 사망 후 50년 •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기산	• 사망 후 50년 • 저작물이 발표되었거나 창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
⑨ 저작물의 이용대가 지급	시장의 자율(당사자 계약)에 의해 결정함	가격제정기관이 요금 정함
⑩ 저작권의 이용제한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학교교육목적 등에서의 이용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번역 등에 의한 복제	• 개인 또는 가정적 범위에서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번역할 경우 •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열,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한 경우 • 학교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방송, 개작할 경우 편집물 작성에 이용할 경우 •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 작성에 이용할 경우 •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에 내는 경우 •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 맹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점자로 복제할 경우
⑪ 저작인접권자의 정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말함	저작권을 이용하여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 받은 자
⑫ 공연한 자의 권리	복제권, 실연방송권	복제, 방송, 배포권
⑬ 녹음 또는 녹화물을 제작한 자의 권리	복제, 배포권	복제, 배포권
⑭ 방송자의 권리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	녹음, 녹화, 사진촬영, 중계방송, 재방송권
⑮ 민사적 구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보상 명시
⑯ 기타 구제	구체적, 형사적 제재 및 행정적 제재 규정	행정적, 형사적 책임 명시
⑰ 유사제도	• 2차적저작물 • 편집저작물 • 저작인격권의 내용(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인격권의 상속 및 양도 금지 • 저작재산권의 상속 및 양도 가능 • 단독저작물, 법인저작물 • 공동저작물 • 저작물의 이용범위(허가의 범위내에서) • 저작물 이용권의 양도 가능 •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인접권자 보호기간	

⑮ 특유규정 및 제도	• 정의규정 • 저작자 등의 추정 •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등의 보호 기간 • 판매용 음반의 제작 • 출판권 제도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 저작권위탁관리업 • 저작권에 대한 심의 및 분쟁조정 • 침해로 보는 행위 • 손해액의 산정	•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저작활동을 보장,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게 함 • 금지된 저작물: 출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음 • 저작권설정원칙: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 • 국가의 저작물 보호 및 이용보장 • 외국과의 교류 협조 강화 • 국가의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
------------------------	---	--

V. 절차법 비교

1. 저작물 이용 원칙과 이용 조건

저작물 이용 원칙의 경우 남한은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저작물의 구체적 이용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당사자의 계약을 통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북한은 국가가 저작물의 이용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국가가 독점하여 저작권사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남북한 간에 현저한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의 조건으로 남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

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³³⁾ 저작물 이용자가 기관, 기업소, 단체 외에 공민도 해당된다는 것은 북한사회에서 사적 거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공동저작물의 권리와 행사방법

두 명 이상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들이 공동으로 가지며, 이 경우 권리행사는 저작권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대표를 정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 있어서는 남북한 간에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¹³⁴⁾ 남한의 경우 대표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북한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3. 저작물의 이용절차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있어서 남한은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¹³⁵⁾ 반면에 북한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¹³⁶⁾ 권리자의 이익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33) 북한 저작권법 제26조.

134) 남한 저작권법 제15조, 북한 저작권법 제17조.

135) 남한 저작권법 제46조.

136) 북한 저작권법 제27조.

〈표 3〉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절차법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① 저작물의 이용원칙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즉 구체적 이용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법률 행위에 의하여 실현됨	국가가 저작물의 이용절차와 방법에 깊이 관여하여 국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함
② 공동저작물의 권리와 행사방법	공동저작물의 저작권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대표를 정하여 권리행사가 가능 ※ 대표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두 명 이상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들이 공동으로 가지며, 공동저작권은 저작권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되고 이 경우 대표를 선출하여 권리 행사 가능
③ 저작물 이용의 조건	누구든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음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물을 보급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하여야 함
④ 저작물의 이용절차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가능 • 저작물 이용요금은 시장의 자율에 의하여 결정함	•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 가능 • 가격 제정기관이 정하고 요금을 지불하여야 함
⑤ 저작인접물의 사용절차	실연·음반 또는 방송 등 저작인접권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공연물, 녹음 또는 녹화물, 방송물을 이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인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함

VI.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남한 저작권법과 크게 다른 점은 출판권 설정 제도, 저작권 등록,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등이 없는 것이고,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공표시점부터이며 미공표저작물은 재산적 차원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저작권법은 개인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가 아닌 국가적인 이익 보호 차원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저작권 법제의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인식하에 앞으로 남북한의 원활한 문화교류는 물론 국제적 · 보편적 질서로의 접근과 법제 통합을 위해서 별도 규정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남한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저작자의 표시가 없거나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안되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과 기산방법에 대해서도 남한법이 준용되도록 하며, 저작권의 이용 제한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출처의 명시와 관련해서도 남한법이 준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의 사용료와 출판권 설정 및 출판할 권리에 대해서도 남한 저작권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저작권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립시켜 나가야 하며 저작권사업에 국가의 개입을 없애고 외국저작물의 보호에 있어서도 보다 폭넓게 개선하여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통합 ·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고윤정 · 김윤희, “북한저작물의 보호”, 통일논총, 제21호(2003).
- 권순택,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평가”, 제도 연구, 2001.
- 권재열 외 8인, 북한의 법체계 : 그 구조와 특색, 서울 : 집문당, 2004.
-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제11집(2002).
- _____, “북한 저작권법 제정의 의의와 해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 박종배,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 법제 통합을 위한 제언”, 배재대학교, 박사, 2010.
- 박태운, “남북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남북한 저작권법 비교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 2002.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편, 법학사전, 1971.
- 송영식 · 이상정 · 김병일, 지적재산법, 서울 : 세창출판사, 2009.
- 윤대규, “북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문제점”, 북한법, 제3권(2000).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서울 : 세창출판사, 2005.
-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서강법학, 제11권(2009).
-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 입문, 서울 : 성민사, 2007.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System on Copyright Law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Jong-Bae Park

Abstract

Although North Korea practices the copyright law, the law itself includes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systems in socialist countries; creative activities certainly has limitation, and the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an original function and role of whole copyright system, are apparently restricted in the country. Legally guaranteeing individual works in North Korea is aimed to awaken protection of their copyrighted materials and reinforce a sense of ownership.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eparated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each have accumulated vast amount of copyrighted works under the two opposite regimes, and when inter-Korean exchanges are vitalized again in the future, mutual protection of copyrighted works from each country and the access to the North Korean works will be much in need.

This thesis, in response to the realistic need, provides the foundation for integrating the legal system on copyright law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Part II of this thesis illustrates the main contents and the overview of Copyright Act of two Koreas. Part III compares the composition of the legislation. Part IV compares substantive laws, and Part V compares procedural laws. Finally, Part VI concludes the study by proposing the direction for integrating the legal system on copyright law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Keywords

Copyrighted author, Copyrighted works, Neighboring rights of copyright law, Publication rights, Legal system on copyright laws, Copyright infringements and remedies.